

『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명칭변경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가. 당초 : 「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」
 - 나. 변경 : 「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」
- 재난현장 총괄 및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본부로 명칭 변경(안 제4조 등)
 - 가. 당초 : 재난현장 통합지휘소
 - 나. 변경 :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
- 현장지휘관 지정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체계를 간소화 함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,
- 현재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 이중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지원본부장을 부단체장으로 명문화하여 직접 실무반을 지휘토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성과 운영 체계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